

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

[]

허가신청서

[]

신고서

※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뒤쪽 참조
신청(신고)인	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변경대상	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			
	영업의 종류	허가번호		
변경사항		변경 전	변경 후	
영업자 성명 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)				
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				
영업소	소재지			
	전화번호			
영업장 면적		m ²	m ²	
주요 영업시설의 변경		(별 첨)	(별 첨)	

변경사유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제출서류	허가사항을 변경(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말합니다)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 가.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(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) 나.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 1부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		
		구분	전자민원	방문·우편민원
		소재지 변경	23,800원	26,5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. 건축물대장 다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라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) 마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) 2.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: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)	소재지외 변경	8,300원	9,300원
		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(신고)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기 간		
변경허가	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7 일
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3 일
변경신고	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즉 시
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

유 의 사 항

1.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.
2.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

가. 영업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),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

나.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
3.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처 리 절 차



신청(신고)인 처리기관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,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)